

보스톤 밀알한인 장로교회 규약

제 1 장 교회

제 1 조 교회

제 1 항 명칭

본 교회는 “보스톤 밀알한인 장로교회”로 칭하고, 영문 표기는 “Boston Mil-Al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한다

제 2 항 교단

본 교회는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 뉴잉글랜드 노회에 소속된 교회이다. 본 교회는 메사추세츠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독립된 본 교회의 규약에 준하여 조직 운영된다.

제 2 조 교회의 정의, 사명

제 1 항 정의

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차 다시 오심을 믿는 신앙 공동체이다.

제 2 항 사명

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 아래 다음과 같이 다섯 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첫째,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귀를 연결하는 예배 공동체

둘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전도 공동체

셋째, 교인의 신앙 교육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연결하는 교육 공동체

넷째, 교회와 한인 사회, 및 주변 사회를 연결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

다섯째, 교회와 땅끝을 연결하는 선교 공동체

제 3 조 교회가 믿는 교리

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인정한다.

제 1 항 성경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원문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본 교회가 믿음을 두는 기초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뿐인, 전적인, 최종적인 권위로서 교회의 믿음과 생활의 기준임을 믿는다.

제 2 항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피조물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

제 3 항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으며,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신 구세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는다.

제 4 항 성령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모든 믿는 자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보혜사이심을 믿는다.

제 5 항 인간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며 그 죄의 삯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는다.

제 6 항 신앙 생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 하며 성도의 신앙 생활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근본임을 믿는다.

제 7 항 교회

우리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성도가 그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다양함을 인정하는 생명 유기체이며 공동체임을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시며 모든

성도는 제사장임을 믿는다. 교회는 새 사람으로 변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제 8 항 기타 교리

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위에 명시된 기본적 교리 이외에 기타 교리를 논할 때는 교회의 임무를 수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제 2 장 교인

제 1 조 자격

교회 등록과 4주간의 기본교육을 거쳐 활동교인으로 허입된다.

제 2 조 권리

일반 교인은 각종 집회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세례교인만이 공동 의회와 소속 기관의 모든 의제에 동일한 발언권, 의결권 및 투표권을 갖는다.

제 3 조 의무

교인은 모든 공중예배에 참여하며 시간, 은사와 재능,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드리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제 4 조 자격 정지 및 회복

당회에 통보 없이 교회를 떠나 6개월이 경과할 경우, 당회의 결의로 교인 자격을 잃는다. 자격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복귀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 후 당회의 결의로 교인 자격을 회복한다.

제 3 장 직분

제 1 조 목회자

제 1 항 담임목사

- 담임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영적 지도자가 된다.
담임목사는 모든 예배, 행사, 교인의 영적 생활을 총괄하며, 제 직분을 임명한다.
담임목사는 목회와 행정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교회의 규약이 정하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담임목사 청빙은 청빙위원회가 주관하며 담임목사직에 합당한 자를 초청한다.
- 담임목사 청빙 결정은 당회의 결의 및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회의 결의 및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결정한다.

제 2 항 부교역자

본 교회 사역의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정을 거쳐 부교역자(목사와 전도사)를 초빙한다.

제 3 항 정년 및 유급직원

교회 모든 유급 직원의 시무 연령은 만 65세를 정년으로한다. 교회 유급 직원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이며, 교회의 모든 직분은 봉사직이다.

제 2 조 장로

제 1 항 직무

장로는 담임목사를 도와 목양, 행정 및 교육 등 전반적인 교회 운영 및 치리에 참여한다.

제 2 항 구분

- 시무장로
공동의회에서 선출하여 시무중인 장로로서 당회원으로 당회에서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이 있는 자
- 사역장로
시무장로의 직무를 다 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교회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장로로서 본인의 은사와 당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부서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는 자

제 3 항 시무장로의 후보 자격

만 35 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 절에 해당하는 남자로 한다.

제 4 항 시무장로의 선출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 5 항 시무기간

시무기간은 3 년이며 한번의 재선출이 가능하다. 시무기간은 연속 6 년을 넘을 수 없다.

제 6 항 해임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장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당회의 결의 및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결정한다.

제 3 조 권사

제 1 항 직무

권사는 목회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 2 항 자격

권사는 여신도중 만 45세 이상 된 입교 인으로서 흠없이 다년간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로 한다.

제 3 항 선출

권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 4 조 안수집사

제 1 항 직무

안수집사는 교회가 맡긴 제반 사역을 수행할 뿐 아니라 목회자를 도와 전반적인 교회 운영에 참여한다.

제 2 항 자격

안수집사는 영적 지도력이 인정된 남자 서리집사들 중에서 세례 받은 후 3년이 경과하고 35세 이상된 자라야 한다.

제 3 항 선출

안수집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 5 조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세례를 받은 지 1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인 남녀 성도로서 본 교회에서 6개월 이상 지낸 자라야 한다. 서리집사는 당회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가 매년 첫 주일에 임명한다.

서리집사는 1년 동안 교회가 필요로 하는 제반 직무를 담당한다.

제 6 조 전입 직분자

타 교회에서 전입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뒤 당회의 심의와 상기의 선출 절차를 거쳐 본 교회 직분자로 임명한다

제 4 장 공동의회

제 1 조 구성

공동의회의 회원은 18세 이상의 본 교회 세례 교인 및 입교인으로 한다.

제 2 조 정기 공동의회

1. 회계 연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1까지로 한다. 당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정기 공동의회는 당해년도도 12월 둘째 주일로 정한다.

제 3 조 임시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정 또는 회원 1/2 이상의 서면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4 조 공동의회 소집

제 1 항 소집 요령

1. 공동의회의 소집 공고는 2주 전에 예배 시 광고와 교회 주보를 통해 공시한다.
2. 공고 시에는 공동의회의 토의 안건을 반드시 명기한다.
3. 임시 공동의회는 제안 공고된 안건만을 처리한다.

제 2 항 의제

1. 교회 부동산 획득 및 처리와 교회 건축
2. 교회 통합 및 해산 또는 교단 가입 및 탈퇴
3. 담임목사의 청빙 및 해임
4.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출 및 해임
5. 교회 규약 개정
6. 당회가 제출한 안건과 기타 본 교회 중요사항을 심의 및 결의
7. 예산과 결산 결의
8. 목회보고

제 3 항 조직

1.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담임목사 부재 시 임시 의장은 당회의 서기가 대행한다.
2. 당회의 서기가 모든 공동의회의 진행을 기록 보관하되, 부재 시 의장의 직권으로 임시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항 정족수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한다.

제 5 항 의결

본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결정은 과반수로 하되, 교회 통합 및 해산, 교단 가입 및 탈퇴와 교회 규약 개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무기명 투표로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당회

제 1 조 구성

당회는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되며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된다.

제 2 조 직무

1. 교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교회의 비전 및 정책의 확정과 추진
3.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을 위임
4. 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목회진과 직원의 임용 및 해임
5. 제반 사역에 대한 지도 및 감독
6. 다음의 사항들은 당회의 결정 후에 공동의회에 상정한다.
 - (1) 교단 가입 및 교회 해산 안건을 처리
 - (2) 교회 부동산의 취득 및 처리와 교회 건축에 관한 안건을 처리
 - (3) 담임 목사의 청빙과 해임
 - (4) 교회 규약 개정
 - (5) 기타 공동의회에 상정할 안건
7. 본 규약이 정하는 당회와 관련된 사안을 결정한다.

제 3 조 회의

1. 당회는 의장의 요청이나 당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2.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며, 부재 시에는 서기가 임시 의장이 된다.
3.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 6 장 제직회

제 1 조 구성

담임목사, 시무장로, 사역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로 구성하며, 담임목사가 의장이 되고 서기 1인을 둔다.

제 2 조 소집

정기 제직회는 일년에 4회, 즉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주에 의장이 소집한다. 당회가 그 필요를 인정할 때와 회원 1/3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나 당회의 결의로 의장이 제직회를 소집한다.

제 3 조 직무

1. 제직회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역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결의한다.
2.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3. 구제와 경상비에 관한 것과 금전 출납은 모두 회에서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4. 제직회는 익년도 1월 둘째 주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 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다음 해의 교회 경상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며 회계는 장부의 검사를 받는다.

제 4 조 제직회 성수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되며 사건이 경미하고 긴급한 일은 성수가 못되어도 의장이 임시 결정하고 그 후에 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재정

제 1 조 수입

교회 재정 수입은 교인들의 각종 현금과 기부금으로 하며 수입금은 재정팀장의 수입결재를 거쳐 교회가 지정한 은행에 예치한다.

제 2 조 지출

예산 항목에 대한 지출은 해당 부서장의 지출 청원과 재정팀장의 결재를 거쳐 지출하며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지출 중 3,000불 미만은 재정팀과 담당 장로의 결재를 거쳐 지출하고 3,000불 이상의 지출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한 뒤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제 3 조 감사

매 회계 년도 말 교회의 모든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는 당회가 결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 예결산 위원회가 하며 감사결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예결산

예산 및 결산안은 예결산 위원회의 심의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 한다.

제 5조 재정관리 및 계수

1. 재정관리 및 계수원은 최소 3인을 원칙으로 한다. (계수, 기록, 입금)
2. 매주 재정 수입 기록부는 당회원과 재정부, 그리고 담임목사 3인이 나누어 보관한다.
3. 모든 재정기록부는 7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그후는 제직회의 의결 후 폐기한다.

제 8 장 재산

제 1 조 교회의 재산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토지와 건물, 시설 및 기물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제 2 조 재산의 취득과 처분

1. 교회 재산의 취득, 등록, 처분, 관리, 보존에 대해서는 당회가 교회를 대표한다.
2. 교회 건물과 토지의 취득과 처분 및 기타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결정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3. 교회 해산 시 본 교회의 재산은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 기증될 수 없고 오직 기독교 단체나 교육 및 자선 사업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수정을 불허한다.

제 9 장 특별위원회

당회는 필요에 따라 규약의 변경, 건축, 중장기 계획, 청빙, 목회자 사례, 인사 등 교회의 특별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 10 장 기록

제 1 조 본 교회는 아래의 기록들을 교회의 사무실에 보관한다.

1. 교회 재무 기록 및 현금 기록

2. 당회 회의록
3. 제직회의 기록
4. 공동의회 회의록
5. 교적부
6. 세례 교인 명부
7. 혼인, 별세 명부
8. 징벌 명부

제 2 조 본 교회의 모든 기록은 충실성과 투명성을 위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당회 회의록, 헌금 기록과 교적부는 본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열람을 제한한다.

제 3 조 모든 사역 부서는 행정 기록을 보관한다.

당회는 모든 기록을 열람 혹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 11장 부설기관

제 1조 본 교회는 교회내 부설 기관을 둘 수 있으며, 부설 기관의 모든 관리(인사, 재정, 감사, 운영)는 교회의 당회 아래에 있다.

제 2조 부설 기관의 편의상 자체 내규를 둘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본 교회의 당회 결의와 교회 내규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부설 기관 설립 원칙

현재 운영중인 본 교회의 부설 기관은 밀알한국학교이다. 추후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의 결정 기관의 논의를 거쳐 추가로 설립 할 수 있다.

제 12 장 부칙

제 1 조 본 규약은 현 교회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서 완결된 것이 아니며, 교회의 발전과 상황변화에 따라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내규수정위원회의 개정안을 당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 2 조 본 규약의 미비점은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본 규약에서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당회의 의결 후, 공동의회에서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본 규약은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